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10
----------	------

제출년월일 : 2010년 0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제천시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시민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의 통합과 단일화 하는 연계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제공과 이중수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
-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2. 주요내용

- 희망나눔콜센터 기능 (안 제4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정보 제공
  -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 수혜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희망나눔콜센터 운영 (안 제5조)
  - 콜센터는 시장이 직접운영하되,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콜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 콜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조건 · 기간등을 명시한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게 함.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지원 (안 제10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붙임(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직선거법)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 인터넷 및 fax 등을 통한 상담, 건의, 신청 등의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저소득계층”이란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말한다.
3. “자원연계”란 수요자가 신청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기관 · 시설 · 단체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 제2장 희망나눔콜센터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콜센터를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른 시설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콜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정보 제공

2.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4. 수혜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콜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콜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콜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콜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조건·기간등을 명시한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게 한다.
-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콜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희망나눔콜센터 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희망나눔서비스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 제4장 보 칙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등) ① 콜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6호 시행일 2009.12.1]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 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 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6호, 2009.2.12, 일부개정]

###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기간 동안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2. 제1호외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천시 공고 제 2009 - 1411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06.

제 천 시 장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제정이유

- 제천시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시민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복지정보의 통합과 단일화 하는 연계센터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제공과 이중수혜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
-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3. 주요내용

- 희망나눔콜센터 기능 (안 제4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정보 제공
  -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복지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 수혜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 통합 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희망나눔콜센터 운영 (안 제5조)

- 콜센터는 시장이 직접운영하되,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콜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 콜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조건·기간등을 명시한뒤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게 함.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지원 (안 제10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이문환	김태순	11/27 최남용			

## 조례제정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9-1411
  3. 공고기간 : 2009. 11. 06 ~ 11. 25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67건
    - 의견제시자 : 없음

불임 : 공고(안) 1부.